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공고 제 2023-225호

실업급여(조기재취업수당) 부지급 통지서 공시송달 공고

아래 대상자는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제1항의 지급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하였기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81조에 의거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후 등기우편으로 부지급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, 폐문부재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3. 12. 21.

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장

1. 건 명: 실업급여(조기재취업수당) 부지급 통지서 공시송달
2. 근 거: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송달 서류의 명칭	송달의 주요 내용	송달불능 사유
오○환	1959.04.13.	용인시 처인구 진덕로 10-15	실업급여 (조기재취업수당) 부지급 통지서 1부	- 처분의 제목: 조기재취업수당 부지급 결정 - 근거: 고용보험법 제6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제84조제1항 - 사유: 남은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1/2 미만(소정급여일수 180일 중 85일 남기고 취업함) - 불복청구: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	폐문부재로 등기 2회 반송 ('23년 12월 1일 최초 발송, 12월 13일 재발송)

4. 공 고 기 간: 2023. 12. 21. ~ 2024. 1. 3.(14일간)
5. 문 의: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 용인고용센터 최인희주무관(Tel. 031-289-2233)